

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이선 위원장외 3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4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4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장 이 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.

나. 주요내용

- 군의회 의결되어야 할 사항 (안 제2조)
 -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
 -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(임대) 계약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,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, 대부 또는 임대계약을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의회결사항에관한조례안

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 (이하 "군의회"라 한다)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결사항)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
2. 연간사용료 1천만원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(임대)계약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